

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제17.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행정판정 또는 해석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그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당사자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심사하는 판정

제17.2조
지리적 적용 범위^{1,2}

이 협정은 당사자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무를 지는 지리적 범위에 적용된다.

제17.3조
공표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신의 법, 규정, 절차 및

¹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영역 주권에 관한 사안이나 해양법에 관한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자의 입장도 저해하지 않는다.

² 이 협정의 목적상, “영역”은 이 조에 따라 결정된 것과 동일한 지리적 범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실행 가능한 경우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자는

가. 자신이 채택하고자 하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그러한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적절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다른 당사자들에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그러한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17.4조

정보 제공

어떠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실제 또는 제안된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에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제17.5조

행정 절차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당사자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자신의 행정 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한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그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해당 문제에 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하여 절차가 개시된 때에 관한 합리적인 통보를 자신의 국내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나. 그러한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의 인에게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최종 행정처분 전에 그 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절차를 따를 것

제17.6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를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2. 각 당사자는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절차의 각 당사자에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그 당사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서 요구되는 경우 관련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적인 재심사를 조건으로 제2항나호에 언급된 결정이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이행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17.7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신의 법과 규정에 반하게 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정보를 어떠한 당사자가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17.8조
비밀유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면, 그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제17.9조
부패에 대한 조치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이 조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17.10조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각 당사자는 1992년 6월 5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한다.

제17.11조 심사제도 및 분쟁해결

외국인 투자 제안의 승인 또는 허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외국인 투자 당국을 포함하는 권한 있는 당국³의 결정⁴ 그리고 승인 또는 허가가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조건이나 요건의

³ 이 조의 목적상, “외국 투자 당국을 포함하는 권한 있는 당국”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다음을 말한다.

- 가. 호주의 경우, 1975년 외국인 인수합병법(연방) 및 그 개정을 포함하는 호주의 외국인 투자 체제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 재무부장관
- 나. 캄보디아의 경우, 다음의 법과 규정 및 그 개정에 따라 지정되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 1) 캄보디아 왕국의 투자법을 공포한 1994년 8월 5일자 캄보디아 왕국법 제03/NS/94호
 - 2) 캄보디아 왕국의 투자법의 개정에 관한 법을 공포한 2003년 3월 24일자 캄보디아 왕국법 제 NS/RKM/0303/009호
 - 3) 캄보디아 왕국의 투자법 이행에 관한 1997년 12월 29일자 하위령 제88/ANK/BK호
 - 4) 캄보디아 왕국의 투자법 개정에 관한 법 이행에 관한 2005년 9월 27일자 하위령 제111 ANK/BK호, 그리고
 - 5) 특별경제구역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2005년 12월 29일자 하위령 제148.ANK.BK호
- 다. 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인 투자법(2019년 3월 15일 채택) 및 그 개정을 포함하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승인의 부여를 담당하는 당국
- 라.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7년 투자에 관한 법 제25호 및 그 밖의 관련 법, 규정 및 정책과 그 개정에 따라 지정되는 외국인투자 당국을 포함하는 권한 있는 당국
- 마.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6479호, 2019. 8.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2018. 7. 6.),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91호, 2018. 2. 27.), 그리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76호, 2019. 8. 20.), 그리고 그 개정에 따라 기재되는 권한 있는 당국
- 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 투자진흥법(법 제14호, 2016년 11월 17일자) 및 그 개정에 따라 기획투자부, 그리고 기업법(법 제46호, 2013년 12월 26일자) 및 그 개정에 따라 산업상업부
- 사. 말레이시아의 경우, 1986년 투자촉진법[법 제327호], 1967년 소득세법[법 제53호], 1974년 석유개발법[법 제144호] 그리고 1975년 산업조정법[법 제156호] 및 그 개정에 따르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장관들
- 아.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 투자법, 2016년 10월 18일자 피이다웅수 흐루타우 법 제40/2016호 및 2017년 3월 30일자 미얀마연방공화국정부 기획재정부의 미얀마투자규칙, 고시 제35/2017호에 따라 미얀마 투자위원회 및 지역/국가 투자위원회, 그리고 미얀마 특별경제구역법, 2014년 1월 23일자 피이다웅수 흐루타우 법 제1/2014호 및 산업구역법, 2020년 5월 26일자 피이다웅수 흐루타우 법 제 7/2020호와 그 개정에 따라 위원회들
- 자. 뉴질랜드의 경우, 2005년 해외투자법 및 1996년 어업법 및 그 개정을 포함하는 뉴질랜드의 해외 투자

집행은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17.12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10장(투자) 및 제12장(전자상거래)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⁵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제8장(서비스 무역),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0장(투자) 및 제12장(전자상거래)의 목적상, GATS 제14조⁶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체제에 따라 승인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장관들

- 차. 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제안되거나 승인되는 분야 또는 활동을 태국의 법과 규정 및 그 개정에 따라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 그리고
- 카. 베트남의 경우, 투자법 및 증권법, 신용기관에 관한 법, 보험업법 및 석유가스법과 같은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 그리고 그 개정에 정의되는 권한 있는 당국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외국인투자 당국을 포함하는 권한 있는 당국을 설립하는 경우, 이 조는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에도 적용된다.

⁴ 이 조의 목적상, “외국인투자 당국을 포함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일본의 경우, 투자내용을 변경하거나 투자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포함하여, 외환 및 대외무역법(1949년 법률 제228호) 및 그 개정에 따라 사전통보를 요구하는 투자 관련 동 법에 따른 결정, 그리고
-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의 개정된 기업규정으로 달리 알려진 공화국법 제11232호에 따른 증권거래위원회, 개정된 1987년 행정규정으로 달리 알려진 행정명령 제292호에 따른 국가안보위원회, 개정된 1987년 유니버시티투자규정으로 달리 알려진 행정명령 제226호에 따른 투자위원회, 개정된 1991년 외국인투자법으로 달리 알려진 공화국법 제7042호에 따라 특정 분야 또는 활동을 규율하도록 관할권 및 권한을 부여받은 필리핀 정부의 관련 기관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개정에 따른 결정

⁵ 당사자들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⁶ 당사자들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일부가 된다.

제17.13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자가 여기는 정보를 그 당사자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당사자가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1)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 2)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대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 3) 통신, 전력 및 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공 기반시설⁷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
- 4) 국내적 비상시나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다. 당사자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공공 또는 민간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한 공공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제17.14조

과세조치

1. 이 조의 목적상,
 - 가. **조세협약**이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 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 나. **조세 및 과세조치**는 수입관세 또는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과세조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한도에서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 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그러한 과세조치와 관련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한도
 - 나. 제10.9조(송금)가 그러한 과세조치에 관련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한도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어떠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과세조치와 관련된 불합치가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5.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자신이 구속되는 기존 또는 미래의 어떠한 조세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대우, 선호 또는 특권의 혜택을 그 밖의 당사자에게 부여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7.15조

국제수지 보호조치

1. 당사자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가. 상품 무역의 경우, 1994년도 GATT 및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나. 서비스 무역의 경우, 약속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약속을 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투자의 경우, 당사자가 심각한 국제수지와 대외 재정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 이동과 관련하여 지불 또는 송금이 거시 경제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제10.1조 (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 투자에 관련된 지불 또는 송금에 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3. 제1항나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은,

가. 국제통화기금협정 및 그 개정과 합치한다.

나. 그 밖의 당사자의 상업적, 경제적 및 재정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다. 제1항나호 또는 제2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일시적이며, 제1항나호 또는 제2항에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그리고

마. 어떠한 당사자도 그 밖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록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

4. 서비스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가. 경제 발전 또는 경제 과도기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국제수지에 관한 특정한 압력 때문에 특히 자신의 경제 발전 또는 경제 과도기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재정 준비금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나. 그러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경제 또는 개발 프로그램에 더욱 필수적인 경제 분야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은 특정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제한 또는 그에 대한 변경은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게 통보된다.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어떠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자는

가. 투자의 경우, 그 당사자에 의하여 채택되는 제한과 관련된 협의가 이 협정 밖에서 달리 개최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협의를 요청하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응답한다.

나. 서비스 무역의 경우, 당사자에 의하여 채택되는 제한과 관련된 협의가 세계무역기구에서 개최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협의를 요청하는 그 밖의 당사자와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한다.

제17.16조

와이탕이 조약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마오리족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뉴질랜드가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그 밖의 당사자들의 인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2. 당사자들은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와이탕이 조약의 해석이 이 협정의 분쟁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19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달리 적용된다. 제19.11조(패널의 설치 및 재소집)에 따라 설치된 패널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이 협정상 당사자의 권리와 불합치하는지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